

# 학과특임교수 운영세칙

제정 2014. 5. 1      개정 2016.12.15  
개정 2015. 9. 1      개정 2021.11.03  
개정 2016. 3.16      개정 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한 학과특임교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학과특임교수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 (개정:2021.11.03)

1. 60세 시점: 최근 3년간의 교육 및 연구성과가 해당 학과 전체 교수의 상위 30% 이내이며, 임용 시점에서 향후 5년간 대학원생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원 중에서 정년퇴직 후에도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년보장교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.(개정: 2021.11.03)

2. 60세 이후: 대학 및 학과의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용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. (신설: 2021.11.03)

제3조(임용원칙) ① 학과특임교수는 60세 이상의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최초 임용할 수 있으며, 제2조 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60세 이후 1회에 한하여 최초 임용할 수 있다.(개정: 2015.9.1.)(개정: 2016.12.15.)(개정: 2021.11.03)

② (삭제: 2021.11.03)

제4조(임용인원) 학과특임교수는 정년보장 교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임용기간) 학과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교원인사규정 제5조1항에 따른 정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. (삭제: 2015.9.1.)(개정: 2016.12.15.)(개정: 2021.11.03)

제6조(임용절차) ① 학과특임교수는 학과인사위원회 심의(필요시 교원인사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평가요청)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② 위원회규정 제7조(소집·의결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(신설: 2021.11.03)

제7조(재임용) ① 최초 임용 후, 제2조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학과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, 학과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12.15.)(개정: 2021.11.03.)(개정: 2026.3.1.)

② 위원회규정 제7조(소집·의결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의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(신설: 2021.11.03)

제8조(추천시기) 학과특임교수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임용시기) 학과특임교수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3.16)

제10조(처우) ① 학과특임교수로 임용된 기간 내에서 정년퇴직 후 최대 5년간 특임교수(비 전임교원)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21.11.03)

② 특임교수(비전임교원) 임기 종료 후에도 학과 및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, 재임용 절차를 거쳐 70세까지 재임용 할 수 있다. (신설: 2021.11.03)

③ 학과특임교수는 별표1에 의한 처우를 할 수 있다. (신설: 2021.11.03)

제11조(준용) 학과특임교수 임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3조 제1항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, 본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만 60~62세 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, 임용시기는 9월 1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다만 제3조 제2항의 POSTECH Fellow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19일부터

적용한다.

부 칙(2021. 11. 03 개정)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다만 2022. 3. 1. 이후의 특임교수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등 사전 준비 절차에는 개정 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표1) 학과특임교수 처우 기준

구분		정년퇴직 전	정년퇴직 후
신분		전임교원	비전임교원(특임교수)
임용절차		총장 임용후 이사회 보고	임용 계약
보수	급여	전임교원과 동일	개인 연구비에서 부담 (대학지원 없음)
	강사료		대학에서 명예교수 수준의 강사료 지급
공간	교수 연구실: 전임교원 지원공간 동일 무상배정 연구용 실험실: 전임교원 지원공간의 1/2 무상배정		
학생지도		학과특임교수 임용만료일을 기준으로 대학원 지도학생을 배정받아 지도할 수 있음	
주거시설		전임교원과 동일	교수아파트 수급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임교원 지원 기준에 의하여 기본평형의 교수아파트 지원